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의 경감 근거를 마련하고, 재난 등 긴급상황에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특기할 사항 없음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.”를 “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재난 관련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재난 관련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난에 따른 인하된 요율 적용례) 제14조와 제31조의 개정규정은
2020년 1월 1일 이후 입은 피해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사용료) ①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<u>따른다</u> .	제14조(사용료) ①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<u>따르며,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공유재산심의회</u> 의 심의를 거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재난 관련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인하된 <u>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</u> .
② ~ ⑧ (생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31조(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 ①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	제31조(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 ①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

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② ~ ⑧ (생략)

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재난 관련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인한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.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785